

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6월 4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6월 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10년 6월 15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박한권)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치시키고, 통장선출 방식 중 반장선출제도가 유명무실해 짐에 따라 타 자치단체에서 보편적으로 시행중인 심사제도 도입 및 반장선출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통장 및 반장의 선출방법을 개선함(안 제5조제3항).

- 1) 통장은 “반장이 선출하거나 통주민이 직선 선출”을 “통장선출 심사회에서 선출하거나 주민이 직선”으로 개선
- 2) 반장은 “주민이 선출하는 방식”을 “통장이 추천하거나 주민이 선출”로 개선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통장 직선제는 주민간 갈등을 가져 오고 통장역할 등을 감안할 때 동장이 직접 위촉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?</p>	<p>○ 동장이 직접 위촉하는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할 사안이라 판단되며, 별도의 심사기구를 구성하여 선정하는 방법이 타당하고 사료됨.</p>
<p>○ 별도의 심사기구를 구성하는 것 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서 선정하는 방법도 있는데?</p>	<p>○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별도의 심사기구를 구성하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함.</p>
<p>○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법과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을 모두 열어놓고 있는데 동장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이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준을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것은 어떠한가?</p>	<p>○ 특수한 지역상황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두 가지 방안을 열어놓고 선출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동장의 재량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함.</p>
<p>○ 통장들의 의견은 들어 보았는지?</p>	<p>○ 수치상으로 조사통계는 없지만 별도의 심사기구에서 선정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.</p>
<p>○ 통장선출심사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?</p>	<p>○ 동장, 시의원,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시행규칙에 기준을 명확히 정하겠음.</p>
<p>○ 여러 가지 선출방법중 동장이 직접 위촉하게 하는 방안 등 어떤 방법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더라도 이에 동의하겠는가?</p>	<p>○ 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겠음. (이상 자치행정과장)</p>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

- 통장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지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.

나. 찬성토론

- 조례에서 정한 통장의 역할이 행정시책에 대한 여론수렴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으므로 그간에 주민갈등의 요인이 되어 온 통장 직선제는 폐지하고 동장이 직접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.

5. 심사결과 : 『수정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594호
의결 년월일	2010. 6. 18 (제161회)

제안년월일 : 2010. 6. 15.

제안자 :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행정시책에 대한 여론수렴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·반장의 역할을 정립하고, 그간 통·반장 직선제가 지역주민들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동장이 통·반장을 직접 위촉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동장이 통·반장을 직접 위촉할 수 있도록 “통장은 통장선출심사회에서 선출하거나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고, 반장은 통장이 추천하거나 주민이 선출한다”는 규정을 삭제함.(안 제5조 제3항)

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안 제5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안 제5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.

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『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.』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통반장의 위촉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반장은 주민이 선출하고 통장은 반장이 선출하거나 통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. 다만, 통·반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④ <u>통·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제3항의 절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5조(통반장의 위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통장은 동장, 시의원,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통장선출심사회에서 선출하거나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고, 반장은 통장이 추천하거나 주민이 선출한다.</u></p> <p>④ <u>통·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제3항의 절차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5조(통반장의 위촉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(삭제)</p> <p>③ <u>통·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
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조 제6항”을 “제4조의2 제5항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5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, “제3항의 절차에 따라 1회에 한하여”를
“한 차례만”으로 한다.

제5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.

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각각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